KOSHA GUIDE

C - 42 - 2020

#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

2020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안전보건공단 김정국

○ 개정자 : (사)한국건설안전협회 최순주

- 제·개정 경과
- KOSHA GUIDE C-42-2011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지침(제정)
- 2020년 11월 건설안전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반영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11항, 같은법 시행령 101조의2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
- 노동부 고시 제2020-3호(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)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33호(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)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53호(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 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지침에 우선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0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

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33호(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)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·사용·해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근로자의 떨어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·사용·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  - (가) "시스템 동바리"라 함은 <그림 1>과 같이 규격화·부품화된 수직재, 수평재, 가 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거푸집 동바리를 말한다.
  - (나) "U 헤드 잭"이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상부에 설치하여 거푸집 널을 지지하는 멍에재를 받쳐주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
  - (다) "받침철물(잭 베이스)"이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하부에 설치하여 미 끄러짐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동바리의 수직과 수평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.

- (라) "수직재"라 함은 거푸집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기둥 부재를 말한다.
- (마) "수평재"라 함은 수직부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에 직각으로 연결 하여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.
- (바) "가새"라 함은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방향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하며 수평재와 수평재,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.
- (사) "링"이라 함은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평재와 가새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.
- (아) "연결핀"이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, 링과 수평재 또는 가새를 연결하여 연결 부재의 이탈을 방지하는 부재를 말한다.
- (자) "관계전문가"라 함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101조의 ②항을 준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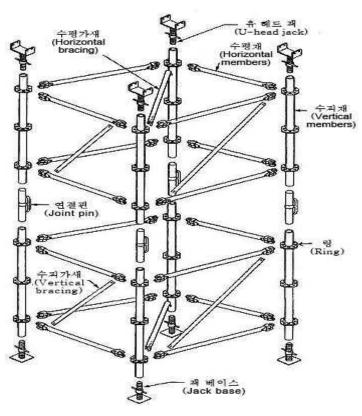


그림 1. 시스템 동바리 구성(예)

(2)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

KOSHA GUIDE C - 42 - 2020

법」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, 같은법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4. 시스템 동바리 설치·해체 안전작업 절차

시스템비계 설치·해체 작업은 <그림 2>와 같이 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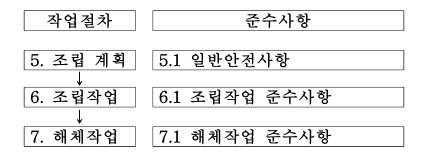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 시스템 동바리 설치 · 해체 작업절차

### 5. 조립계획

#### 5.1 일반안전사항

- (1) 시스템 동바리 조립·해체 작업은 작업단계별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·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.
- (2)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,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.
- (3)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발주자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동바리는 관계전문가(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에 따른다)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.
- (4) 시스템 동바리 조립도에는 동바리·멍에 등 부재의 재질·단면규격·설치간격 및

# C - 42 - 2020

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
- (5) 시스템 동바리 조립·해체 작업 근로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6) 시스템 동바리 조립·해체 작업 근로자는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, 안전화 등)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.
- (7) 시스템 동바리 조립·해체 및 변경 작업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8)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(가)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과 불량품 제거
- (나) 기구·공구·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점검과 불량품 제거
- (다)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 및 작업 진행 상황
- (라)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태
- (마) 악천후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

#### 6. 조립 작업

#### 6.1 조립작업 준수사항

- (1) 시스템 동바리 재료는 안전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, 재사용하는 시스템 동바리는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시스템 동바리 재료는 변형·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(3) 시스템 동바리 재료를 하역·운반하는 크레인 등의 장비는 제조사의 매뉴얼 과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 정격하중 등을 준수하고, 크레인 운전원의 자격, 자동차검사증,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, 운전원과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장비의 정격하중,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(4) 시스템 동바리 조립 작업은 작업단계별 유해·위험요인을 도출하고,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(5) 시스템 동바리 조립은 조립 장소에 조립도를 비치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.
- (6) 시스템 동바리 조립 순서는 다음과 같이 조립하여야 한다.
  - (가) 지반의 지내력과 평탄성 확인
  - (나) 먹줄 메김 등의 방법으로 잭 베이스 설치위치 표시
  - (다) 잭 베이스 설치
  - (라) 잭 베이스와 하부 조절형 수직재 설치
  - (마) 수직재에 수평재 설치 및 핀으로 고정
  - (바) 수평가새 설치
  - (사) 수직재, 수평재, 수직 가새 순으로 소정의 높이까지 설치
  - (아) U 헤드 잭(명에 및 높낮이 조절) 설치
- (7)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는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,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, 슬라브 두께가 500mm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수평재는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mm 이하에 설치하거나, 해당 전문가의 안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조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 및 최상단 수직재와 U 헤드 잭 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10) 수직재와 받침철물(잭베이스)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11) 시스템 동바리 설치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, 다만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(12) 잭 베이스는 〈그림 3〉와 같이 전체길이는 600mm 이내이어야 하며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길이는 200mm 이상 확보하고, 최하단 수직재는 받침철물(잭베이스)의 너트와 밀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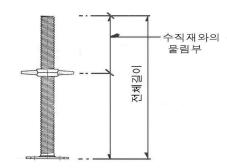


그림 3. 받침철물(잭 베이스) 물림길이(예)

- (13) 받침철물(잭 베이스)의 잭 스크류를 조절하여 수직재에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14) 받침철물(잭 베이스)을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쐐기 등으로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15) 시스템 동바리의 U 헤드 폭은 〈그림 4〉과 같이 멍에 또는 장선을 설치에 충분 한 폭 이상이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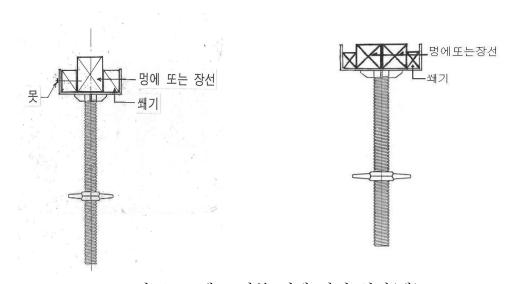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. U 헤드 상부 멍에 장선 설치(에)

- (16) 장선 또는 멍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U 헤드 중심축에 설치하고, 횡방향이동 방지를 위하여 쐐기나 못 등으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17) 시스템 동바리의 하부 지반은 상부하중에 견딜 수 있는 지내력을 확보 하여야

# KOSHA GUIDE C - 42 - 2020

한다.

- (18) 시스템 동바리 조립 작업 근로자의 수직·수평 이동통로와 작업발판과 추락방망 등 떨어짐 방지 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9) 시스템 동바리 조립·해체작업 근로자는 수직·수평 이동은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안전대 착용하는 등 떨어짐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20) 관리감독자는 시스템 동바리 조립을 완료한 다음 점검하여야 한다.

#### 7. 해체작업

# 7.1 해체작업 준수사항

- (1) 해체작업은 시기는 타설된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 발현을 확인하고 작업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해체작업 근로자는 안전대의 착용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, 사업주는 근로자의 떨어짐 등 재해예방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시스템 동바리 해체작업은 작업전 작업발판 등에 부재, 공구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시스템 동바리 해체작업은 조립의 역순으로 실시가 일반적이나 작업전 해체작업 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.
- (5) 해체작업은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 야 한다.
- (6) 해체작업 장소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작업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작업장 에 출입하지 않도록 감시자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.
- (7) 해체 부재는 동일한 규격별로 정리 정돈하여 하역은 인양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인력 하역은 달줄,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